議政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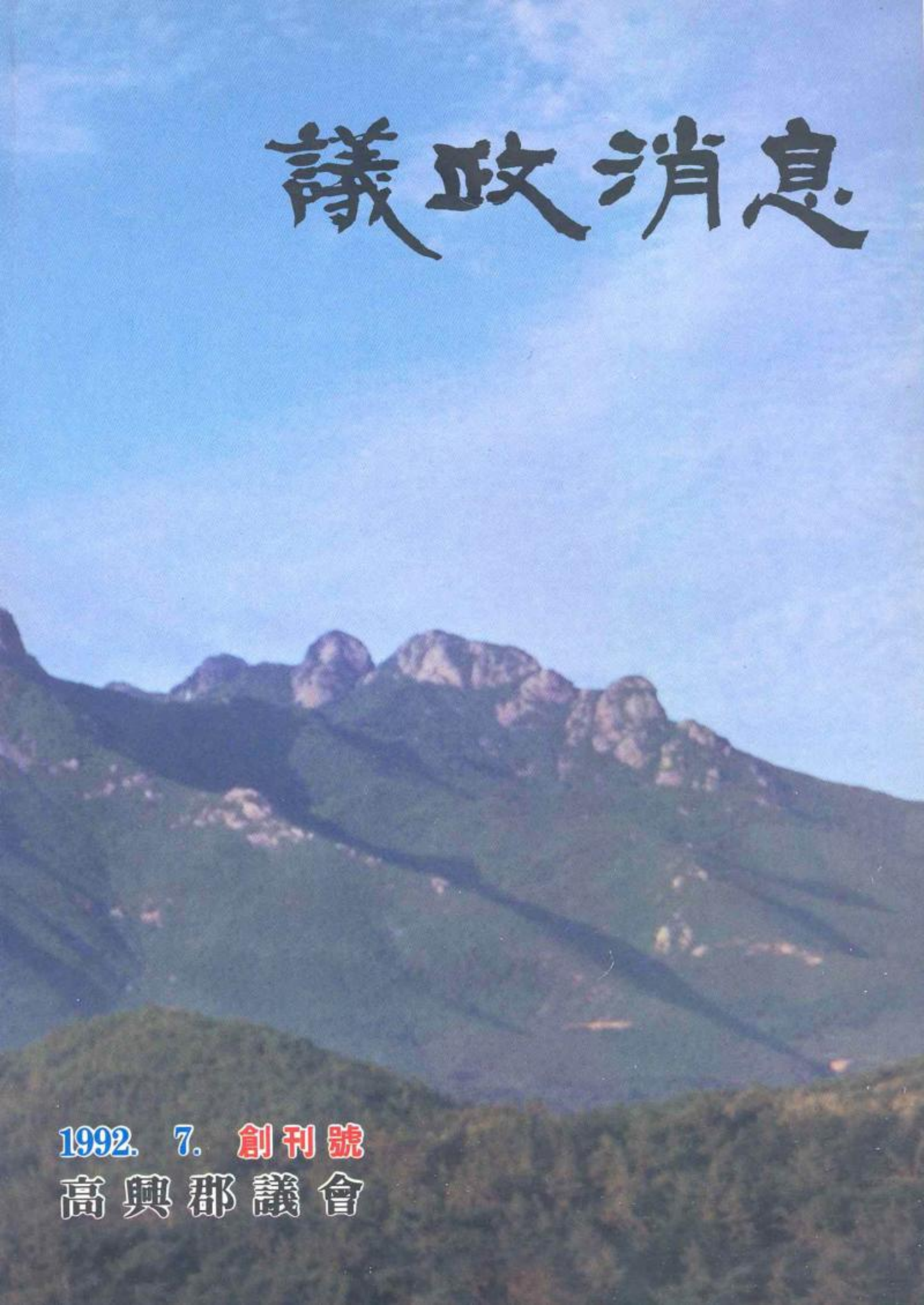

1992. 7. 創刊號

高興郡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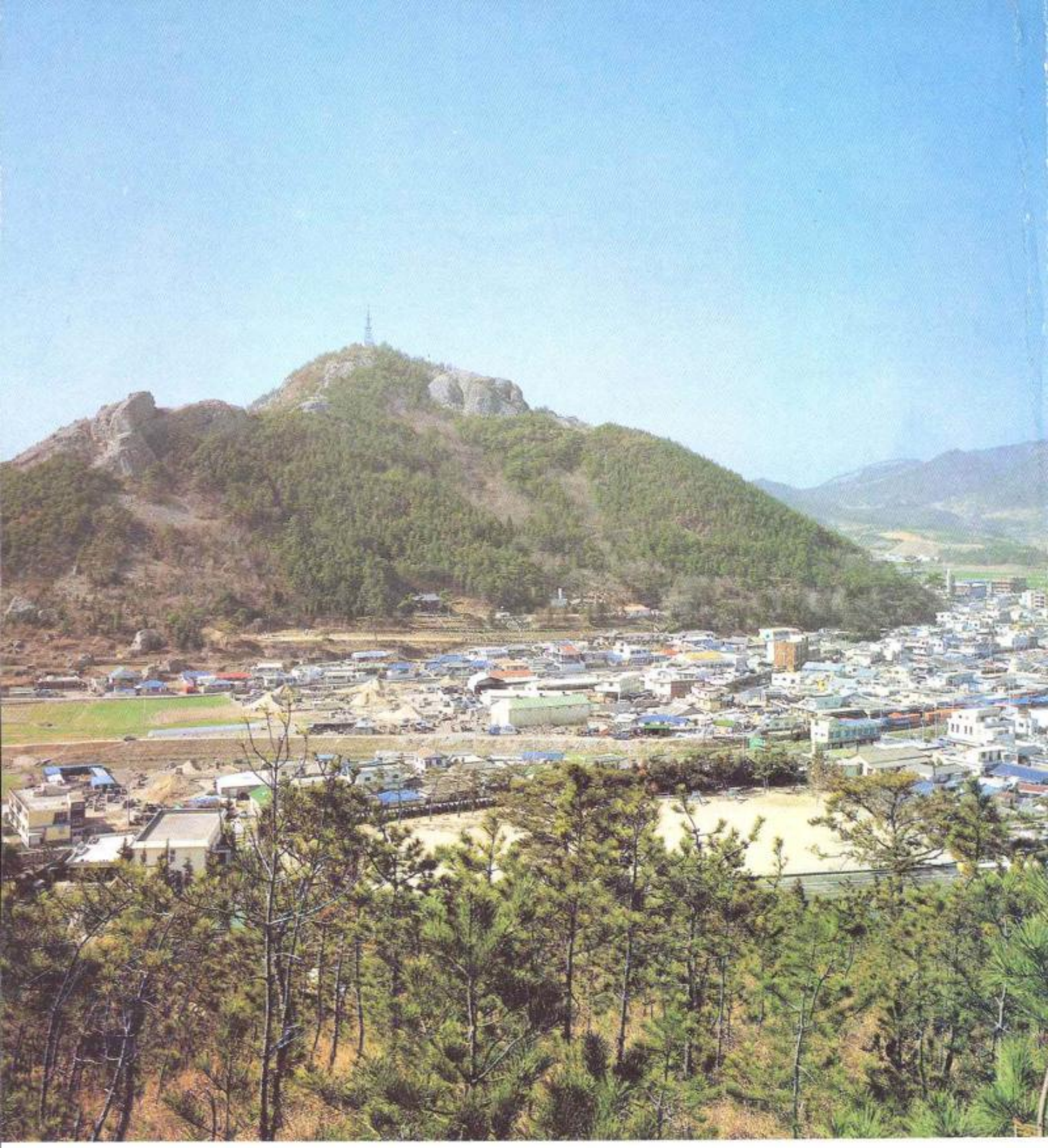

沿　　革

- 1285年 (高麗朝)忠烈王11年 長興府 管轄에서 高興縣으로 昇格 監務를 두었음.
- 1395年 (朝鮮朝)縣을 廢止하고 寶城郡 北陽縣에 屬하였다가 1397年 兵馬使를 設置, 縣事를 兼하였음.
- 1441年 (朝鮮朝)世宗大王때 長興府의 荳原縣과 寶城郡 南陽縣을 統合, 興陽縣이라 改稱하였음.
- 1895年 (高宗23)高興郡으로 改稱, 現在에 이름.

高興邑 市街地 全景 Views of Kohúng-úp

History

Kohŭng County was named Kohŭng-hyŏn under King Chŭngyŏl's reign in the Koryo Dynasty in 1285.

It belonged to Choyang-hyŏn, Posŏng County, in 1395, and two years later Pyŏngma-sa was established to govern the area.

It was renamed Hungyang hyŏn, uniting Duwŏn-hyŏn, Changhŭng-bu and Namyang hyŏn, Posŏng County, in King Sejong's reign during the Yi Dynasty, 1441.

It was given its present name in the 23rd year of King Kojong's reign in the Yi Dynasty, 1895.

議政消息

1992. 7. 창 간 호

발 행 처 / 고흥군의회사무과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우편번호 : 548-800
전　　화 : (0666)35-1228
F A X : 행정 364
발 행 인 / 고흥군의회의장
박 채 주
편 집 인 / 고흥군의회사무과장
신 충 우
취　　재 / 고흥군의회사무과
의사계장 김정민
인 쇄 처 / 고려인쇄공업사

表 題

涮奄 **宋 正 熙** 題字

-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출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연2회 특선
- 한국작가협회전 최우수작품상 수상
- 국전 초대작가
- 고려대학교 강사
- 홍양문우회 회장
- 동남아 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한·중 서예가 협회 한국대표
- 한·일 교류전 한국대표 및 심사위원

차　례

- **創刊辭** / 議長 朴彩柱 ····· 4
- **祝刊辭** / 高興郡守 李鉦均 ····· 5
- **祝刊辭** / 國會議員 朴相千 ····· 6
- **議會에 바란다.** ····· 7
- ○ **고흥인의 얼과 전통을 살려 떳떳한 군민상을 만들어 주도록** / 高興郡榮會長 洪脊杓 ····· 7
- ○ **농어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 農協高興郡支部長 鄭龍寓 ····· 8
- ○ **강자보다는 약자편에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 高興郡水産業協同組合長 鄭炳南 ····· 8
- **議長에게 듣는다.** ····· 9
- **나의 議政方向** / 全議員(16名) ····· 11
- **우리 議會에서는 이런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18
- **議政活動의 이모저모** ····· 21
- **地方議會制度의 沿革** ····· 29
- **郡政질문 및 답변** ····· 30
- **條例 制, 改正 內容** ····· 36
- **文化財 紹介** / 高興存心堂 및 衙門 ····· 44
- **議會構成 現況** ····· 45
- **지방의회 일반상식** ····· 46
- **투고환영** ····· 48

지방의회 일반상식

지방의회 권한

▣ 지방의회 의결 사항(법 제35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조례에 정해진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법 제36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도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법 제3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회 의

▣ 집회(기초의회)

- 정기회 : 매년 11월 25일 개회
- 임시회 :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 회 기 : 정기회 30일 이내
  임시회 10일이내(년 30일 이내)
- 연간회의 총일수 : 60일 이내

▣ 정 족 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 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제외)

▣ 개의 및 산회

본회의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안건 심사가 끝나면 산회한다.

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 개원

創 刊 辭

高興郡議會議長
朴 彩 柱

지난 91년 4월 15일 郡民의 期待속에서 우리 高興郡議會는 여러분께서 直接 選出해 주신 16名의 議員이 住民의 權益伸張과 福利增進 그리고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誠實히 遂行 할 것을 엄숙히 宣誓하면서 歷史的인 開院式을 갖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議政壇上에 섰던 지난 한 해는 地方自治의 元年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經驗이나 資料도 없이 開拓者 精神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가야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오로지 郡民을 爲한 議政의 기틀을 다지고자 郡政質問, 議政報告, 懇談會, 現地調査 등 業務研鑽을 通한 模範的인 議員像 定立은 물론, 議會와 執行部 그리고 住民의 智慧를 한데모아 地域均衡 發展의 기틀을 다진 한 해 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各界各層의 郡民들과 많은 對話를 통하여 議政에 反映하므로써 住民과 共感帶를 形成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地方自治의 根幹이라 생각하며, 여기 의정소식지에 의정활동의 이모저모를 수록해 보았습니다.

內容이 充實하지 못할지라도 歷史는 恒常 事實의 記錄에만 그치지 않고 언제나 教訓的인 貴重한 價値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저는 의정소식지를 통해 지나간 議政史를 다시한번 照明해 보고 그간 議員同志들께서 郡民福祉增進에 애쓰신 事項을 斷片的으로 照鑑해 보면서 郡民 여러분의 投稿나 提言을 積極 受容하므로써 輿論收斂의 章으로 活用코자 합니다.

우리 모두 眞正한 地方自治의 成熟한 發展을 위하여 다같이 郡政에 參與하고 議會에 대한 郡民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과 보다 많은 聲援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우리고장發展을 위해 不撤晝夜 애쓰신 郡守님를 비롯한 各及 機關團體長과 任職員 그리고 本 議政消息誌 創刊에 參與해 주시고 祝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年　　6月　　日

祝 刊 辭

高 興 郡 守
李 鉦 均

지난해 4.15 郡民들의 期待와 輿望속에 本郡 議會가 開院된 이래, 郡政全般에 걸쳐 많은 協助와 激勵로 우리郡의 行政이 郡民爲主의 行政으로 着實하게 定着되어 나갈 수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議員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욱 알차게, 그리고 다가올 未來는 보다 希望이 넘치는 郡政의 設計가 되도록 우리모두가 努力하고 追求하는 것이 우리의 所望이자 郡政의 窮極的인 目標인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온 議政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의정소식지를 創刊하게 된 것을 15萬 郡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地方自治 2次年을 맞이하여 우리郡民 모두가 故鄕에 대한 強한 歸屬感과 文化的 矜持를 바탕으로 地方的 主體性을 드높이는 地方化時代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議會와 우리 執行部는 지난 1年동안의 成果와 敎訓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住民自治 意識의 涵養, 地方議會의 役割增進, 地域 利己主義 克服등 當面한 發展課題에 대하여 實踐的인 努力을 기울여 地方自治를 더욱 確實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는 莫重한 責任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政治·經濟·社會 各 分野의 民主化 趨勢에 副應하여 우리 議會도 郡民의 바람을 屈節없이 反映시키므로써 郡民에게 보람과 希望을 주는 議會, 不便과 負擔을 덜어주는 議會, 그리고 郡民이 아쉬워 하거나 억울해 하는 事情을 풀어주는 고을 살림살이의 眞正한 入案者가 되고 監視者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모두가 所望하는 "自治力量의 培養" "郡民所得의 增大" "地域開發 促進"을 위해 生産的 議政活動을 펼쳐주실 것을 付託드리면서 『議政消息志』의 創刊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1992年 6月 日

祝 刊 辭

國 會 議 員
朴 相 千

고흥군 議政消息誌의 창간을 15만 고흥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고흥군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군민과 地域發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宣誓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意慾은 있으나 의원직무의 수행이 처음이고, 無報酬 名譽職규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서 뜻대로 안되는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염려를 씻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훌륭하게 했다고 봅니다. 군수가 편성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不要不急한 부분을 削減하고 再編成하여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했으며, 또한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不實工事는 없었는지, 혹시나 不正은 없었는지 현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므로써 군민이 낸 稅金이 한톨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투철한 公人의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민선군수가 長期計劃을 세워 地域發展을 시켜야 지방이 발전되고 인구의 대도시 이동을 막아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흥군 議政消息誌에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公人精神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利益과 公益, 즉 고흥군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앞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先公後私는 우리선조들이 애써 실천한 德目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 입니다.

둘째는, 이 의정소식자가 우리들 의원들이 行動하는 公人이 되도록 격려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公人이 아니라 약속한 일은 實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활동을 각 의원별로 자세히 보도하면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써 노력하는 의원들이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創刊을 祝賀드리면서 祝辭에 가름합니다.

1992年　　6月　　日

“議會에 바란다.”

고흥인의 얼과 전통을 살려 떳떳한 군민상을 만들어 주도록

지방화시대에 책임과 使命을 공감하면서 그동안 초대 의원으로서 군정에 바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역사와 傳統이 깊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반도로써 농수산물이 풍부하고 인심이 순후하여 살기좋은 고장일 뿐 아니라 훌륭한 文化遺産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향의 역사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군민의 성격이 너무 淳朴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지방화시대와 함께 우리 군민의 성격이 是是非非를 분명하게 가릴줄 아는 민주시민의 투철한 정신으로 轉換하고 우리군의 고귀한 문화유산들에 서려있는 조상들과 얼과 전통을 되살려 떳떳한 군민상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發展의 主役으로서 군민의 福祉向上에 집행부와 일체가 되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군민의 어려움을 샅샅이 살피고 다정하게 돌보는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 기 표 / 고흥군 번영회장

農漁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풀뿌리 民主主義 産室로 地方議會가 構成된지도 이제1년이 넘었다.

그동안 民主主義와 地方自治가 우리 時代의 歷史的 召命으로 認識되어 오다 30년만에 地方自治制가 復活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온 國民의 關心과 期待가 컸었다.

반면에 國民의 民主主義 訓練不足과 地方自治制에 대한 經驗不足 때문에 제대로 運營될까 하는 念慮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1年을 넘기는 過程에서 우리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郡議會가 郡民의 意思를 收斂하여 地方行政에 反映하는 議政活動이 活潑해지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도 많은 變化를 보이고 있는게 事實이다. 地方自治의 成敗는 무엇보다 地域住民의 關心과 參與에 달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地方議會는 어떠한 經路를 通하든 郡民의 欲求와 意思를 收斂하여 地方行政에 反映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억눌렸던 住民의 欲求가 地方議會의 構成과 더불어 爆發的으로 噴出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此際에 郡議會에서 郡民의 意思를 議政에 反映하고 그 結果를 군민에게 傳達하여 共感帶를 형성하므로써 地域發展과 郡民福祉 向上에 寄與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本郡 事業構造가 農水産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傳統的인 農水産 郡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地域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農水産物의 收入開放化의 물결속에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昨今의 우리 農村, 農業, 農民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愛情으로 農漁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郡行政에 反映되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役割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鄭 龍 禹 / 農協中央會高興郡支部 支部長

強者보다는 弱者편에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숱한 試鍊끝에 풀뿌리 民主主義 구현이라는 커다란 여망을 안고 地方議會가 復活되어 郡民의 어려움을 代辯해 줄 德望높은 열여섯 분의 郡議員을 選出한 바 있습니다.

작금의 사회현상은 不況에 허덕이는 經濟難과 일부階層의 過消費 풍조가 만연 되고 있는 가운데 多數 郡民의 땀으로 얼룩진 勞力이 제목소리를 찾지 못한채 漂流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郡民모두가 郡議會에 거는 期待와 希望은 그 어느때 보다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힌 곳과 고여 있는 곳은 뚫고 치워서 舊態依然한 行政의 死角地帶를 반드시 일소해야 함은 물론 양지 보다는 음지에 눈길을 돌려 郡民의 가려운 곳에 眞情한 손길을 줄 때 더불어 사는 社會가 具顯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現在 郡內 곳곳에 풀어야 할 숙제와 課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소외받고 社會的으로 격리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活氣찬 議政活動을 위해 深度있게 住民의 여론을 收斂하여 強者보다는 弱者便에서, 가진자 보다는 貧困한 계층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군민 권익신장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鄭 炳 南 / 高興郡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議長에게 듣는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희망과 기대속에 우리 고흥군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표출된 군행정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의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66일에 걸친 아홉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기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 45건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으며, 군의 살림살이인 '91년도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3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의하였고, 또한 '92년도 892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보름간에 걸친 심의끝에 군민의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 승인하는 등 총 105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군민의 기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과 결과가 '얼마만큼 민주적이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원 모두는 참신한 의사와 열의를 효율적으로 조정, 생동하는 의정, 군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열을 쏟아 지난 50년대의 초기 지방의회와 같은 대립과 갈등이 또다시 점철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 사회는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나와 내 가족만이 잘살고 무사하면 된다는 개인주의, 우리집단만 좋아지면 상관없다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 어느때 보다도 책임과 도덕을 바탕으로한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우리군의회는 군민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화합과 단결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비판보다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건설적인 비판과 통제기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 할 시대적 상황이 산재되어 있어 그 어느때 보다

도 군민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결집된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의 민주의식을 높여가지 않으면 갓트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싹이 언제 시들지 모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 방향은 관광자원개발에 두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팔영산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을 개발하므로써, 봉래면과 금산면이 연륙되었을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또다시 찾는 고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이 있었던 일은 지난 1, 2월에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므로써, 군민들의 성원에 일부라도 보답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첫돌이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성급한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한 만큼 질책보다는 격려와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의 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議政方向

민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부 의 장
유 택 근 / 의원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초대 군의회 의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권위보다 준공무원의 위치에서 행정능력을 배양하면서 행정부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의 교량역으로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앞장 서겠으며, 특히 농어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복지고흥을 건설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의 충고와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겠다.

부조리 척결로 군민의 신뢰회복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의회운영

운 영 위 원 장
김 동 인 / 의원

권위주의 행정의 제도권 속에서 일부 군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친절과 정직성에 바탕을 둔 균정수행일 것이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와 도덕성이 잘못된 공직자가 있다면 선량한 대다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사무실을 민원창구로 개방하여 민원을 직접 수렴하고 해결 하겠으며, 정기 감사 및 수시 조사활동으로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여 군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1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충분한 의안심의로 시행착오 최소화

총무위원장
송 기 복 / 의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중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막상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힘겨운 자리라 생각한다.

각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철저한 법치행정을 기초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군정을 돕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제반 의안을 충분히 심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산업건설위원장
김 남 규 / 의원

의원은 양심과 성의를 가지고 군정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집행을 감시하여 비판하는 것을 본분이라고 할 때 집행부와의 대립되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면,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민의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군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특히 농수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고소득 작목재배, 판로개척 등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會議關聯用語

1日 1回 會議 原則

- 하루에는 1回次의 會議를 여는 것이 原則(즉 散會 宣布후 그날 다시 會議를 열려면 停會를 宣布하여야 함.)
- 1回次 會議는 2日間에 걸쳐 열지 않는 것이 原則

자원봉사자의 자세로 일하겠음

이 경 수 / 의원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합니다.

인류가 찾아낸 가장 좋은 제도인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방자치의 토대 위에서만이 발전될 수 있으며, 지역개발을 이루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무의미 하다고 본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자원봉사자의 자세로 주민의 불편함과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는데 보람을 갖고, 우리고장의 자연환경을 되찾아 살기좋은 고향을 물려주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므로써,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

농업기계화 및 생산기반조성에 주력

박 동 래 / 의원

"저 사람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바탕으로한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의회의 실상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므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특히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복지농촌건설에 힘쓰겠다.

質問과 質疑의 區別

ㅇ 質　問 : 地方行政 全般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에 所見을 묻고 說明을 要求하는 것.

ㅇ 質　疑 : 議題가 된 案件에 대하여 提案者 또는 關係人에게 質問事項을 물어보는 것.

※ 質問은 口頭 또는 書面으로 하나, 質疑는 通常 口頭로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에 치중

신 윤 식 / 의원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로 민주정치적 기반확보라는 정치적 측면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기술적 측면등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있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인심이 좋고 산자수려한 고흥이기에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복지농어촌건설에 매진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느 지방 못지 않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농현상을 막고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가는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고소득 작목개발을 통한 농어업 소득증대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흥 건설에 전 행정력이 집중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

지역의 균형발전에 앞장 서겠음.

류 준 상 / 의원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지방자치제가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욕구가 분출되면서 자치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또 다른 부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이 편향, 발전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앞장서므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앞장 서겠다.

會議關聯用語

- 散　會 : 議事日程에 올린 議事가 끝나 當日의 會議를 끝내는 것.
- 休　會 : 會期중 議決로써 會議를 中止.
- 閉　會 : 豫定되었던 會期를 끝마치는 것.

어민후생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터

고 임 준 / 의원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업군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세성을 탈피못하고 있는 어민의 현실을 감안, 중어정책을 수립토록하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의 전업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조성책으로 인공어초 대량투하, 종묘 배양시설, 소규모 어항시설, 어선세력 현대와, 1어장 1가공공장사업 추진, 전통식품개발 보급확대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어민 권익신장을 위해 유통구조개선, 수산물 직매장설치, 수산물제값받기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영세어민을 위해 영어자금 지원책을 강구하여 어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을 위한 올바른 비판과 감사자 될터

최 형 문 / 의원

개원이 된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

그간 지역내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대승적 입장에서 여과하고 상호 대립하는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평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엄숙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민, 행정기관, 동료의원과의 관계에 입장 곤란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럴때마다 의원은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 바른비판과 감시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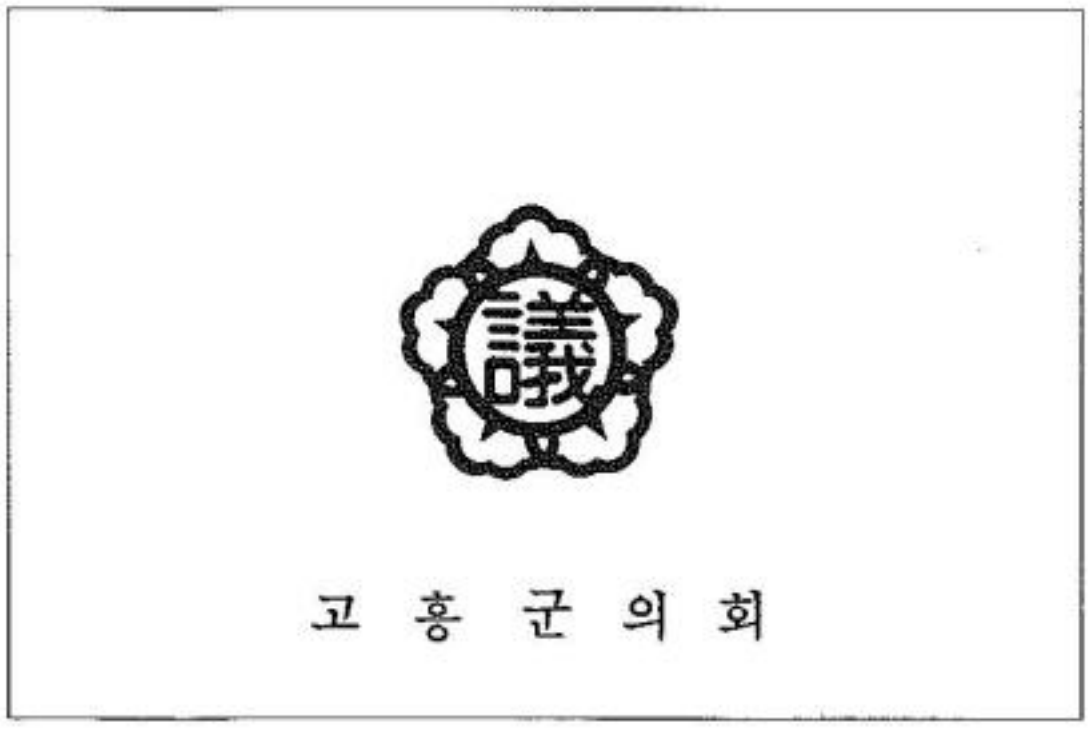

의회기의 모형도

["고흥군의회" 표지]

- 글자의 종류 : 명조체
- 글자의 색상 : 청 색

관광자원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힘쓸터

김 선 규 / 의원

본 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광활한 청정해역은 어족이 풍부하여 전국 규모의 바다낚시대회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사질이 좋은 해수욕장이 산재해있는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팔영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면 바다와 산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여수, 순천, 여천, 동광양 시민의배후 휴양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팔영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개발에 힘껏 노력하겠다.

관광자원개발로 군민소득향상과 재정자립도 제고

송 복 조 / 의원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군민소득향상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은 관광자원개발에 있다고 보며, 장기 계획으로 일제하에서 국유화 되었던 소록도가 국립나병원으로써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소록도를 군유화하여 앞으로 연륙될 금산연육교와 함께 팔영산을 관광지로 개발, 다도해 국립해상공원과 연결한다면 국내의 어느곳에 못지 않는 관광 명소가 되리라 본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재정자립을 위하여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겠다.

의회기의 규격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센티미터, 세로 120 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70 센티미터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주민 군정참여유도로 민의 행정 기틀 다질터

박 용 호 / 의원

민의에 밀착된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느낀다.

그간 자치시대가 있기까지 관료주의적 행정에 얽매인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도 구태의연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리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시 지역주민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

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송 용 현 / 의원

갇혀있던 봇물이 터지듯이 쏟아지는 다양한 많은 민의를 수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주민을 대변하여 군정에 직접 참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 하나,

해야 할 사업들은 무한정하고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시에 지역사업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우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부터 한가지씩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에 노력

정 영 표 / 의원

의회는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보장된 권한과 제도범위내에서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전반의 운영이 적법하고 적정공평하며 효율적인가를 냉철하게 비판감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하며 주민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므로써 주민과 행정간의 교량적 역할로 행정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므로써 민주화의 시대적 산물인 지방자치제도 조기정착에 앞장서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 1 회 임시회(1991. 4. 15~4. 16)

1991년 3월 26일 초대 고흥군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16명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1. 4. 15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서재관 군수로부터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을 파악하였다.

- 의 장 : 朴 彩 柱(점암출신)
- 부의장 : 兪 澤 根(도양출신)

제 2 회 임시회(1991. 5. 28~5. 30)

제2회 임시회에서는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불합리한 군정수행은 시정토록 촉구하였고, 산자수려한 고흥을 지켜내고 우리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핵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환경파괴에 대하여 단호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으며, 또한 농협 고흥군지부와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고흥군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고 군민을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 3 회 임시회(1991. 7. 15~7. 24)

제3회 회의는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부담의 한계를 전제로 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보고를 받았으며, 풍양면 상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5억원의 기채를 승인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품위있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교육위원 2명(김갑수, 박상진)을 선출 도의회 추천하였다.

제 4 회 임시회(1991. 9. 14~9. 19)

제4회 임시회는 5건의 조례 및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군내버스 활성화 대책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규의원)를 구성하여 군내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대책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승인하였다(예결위원장 송용현의원).

구 분	예 산 액
• 기정예산	62,703,576 천원
• 추경예산	3,092,163 천원
• 총 규 모	65,795,739 천원

제 5 회 임시회(1991. 10. 19~10. 22)

제5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용

예비비 520,000 천원을,

- 소규모 어항개발 70,000 천원
- 군도 7호선 개설 50,000 천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000 천원으로 전환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를 승인하였으며,

○ 물품정수 승인내용

- 신 규 배 정 : 40종 120개 품목
- 대체구입배정 : 13종 60개 품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 취 득(5건) : 4,414m²
- 용도폐지(1건) : 62.8m²
- 처 분(3건) : 12m²

제 6 회 임시회(1991. 11. 19~11. 23)

제6회 임시회는 6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 개정하였으며,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특별위원회(위원장 유택근의원)와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래의원)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제 7 회 정기회(1991. 12. 2~12. 31)

제7회 정기회는 개원하여 처음맞는 정기회로 이정균 군수로부터 1992년도 군정시책 방향과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2. 9~12. 10일까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였고, 12. 12~12.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정영표의원)를 실시하였으며, 12. 16~12.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인의원)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12. 2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89, 222, 530천원의 19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 1992년도 예산승인내역

- 총 규 모 : 89,222,530 천원
- 일반회계 : 5,089,721 천원
- 특별회계 : 38,132,809 천원

이밖의 16건의 조례를 제, 개정하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 8 회 임시회(1992. 4. 8~4. 11)

제8회 임시회는 '9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였으며, 조례 및 규칙 16건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하였고, 일반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추가 배정안을 승인하고, '91년도 시행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제 9 회 임시회(1992. 4. 27)

제9회 임시회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회별	위 원 장	간 사
운 영 위 원 회	김 동 인	류 준 상
총 무 위 원 회	송 기 복	박 동 래
산업건설위원회	김 남 규	송 복 조

제 10 회 임시회(1992. 5. 28)

제10회 임시회는 '91년도 시행 주용사업 실태를 보고 받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광역상수도시설공사 총 소요사업비 9,156백만원중 '92년도 소요사업비 1,554백만원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320백만원을 기채하고,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120백만원을 차입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조례 3건을 개정하고 1건을 폐지하였다.

의정활동의 이·모·저·모

전체 의원 읍면 순방

'91. 5. 13~5. 17일까지 5일간 전 의원이 16개 읍면을 순방하여 의회 개원을 알리고 읍면단위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읍면정을 청취하였으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였다.

주민생활민원 처리

'91. 8. 19~8. 21까지 3일간 부실공사 및 환경오염 문제로 민원이 있는 군도 7호, 8호선과 점암면 화계 경지정리지구 그리고 두원면 운대 양돈장 2개소와 양어장의 실태를 현지조사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다.

'91의정보고회 개최

- 읍면순회 군민초청 의정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시간 가져 -

고흥군의회는 '91. 1. 22~2. 15일까지 25일간에 걸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1년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각계각층의 군민 4천여명을 초청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의정보고와 지역출신 의원의 활동상황 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박채주 의장은 인사말에서 **"선례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질책보다는 충고로 격려하여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고,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매우 뜻깊은 자리를 갖고 의회 민주주의 새장을 열었다.

會議關聯用語

※流　會 : 議事定足數(在籍議員1/3) 未達로 當日의 議會를 열지 못하는 것.
- 會議 開議時로부터 1時間이 經過할 때까지 議事定足數에 達하지 못할때 流會 宣布 可能.

※停　會 : 會議進行을 一時 休息하는 것

※續　開 : 停會된 會議를 다시 始作하는 것.

의 원 윤 리 강 령 제 정

- 의원의 행동을 다스리는 지침으로 실천하는데 노력 -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는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1. 7. 24)에서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高興郡議會 議員 倫理綱領

우리 高興郡議會 議員은 主權者인 郡民으로부터 郡政을 受任한 代表로서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 郡民의 信賴를 받아 議會와 郡民의 利益增進에 寄與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高興郡議會 議員이 遵守할 倫理綱領을 定한다.

1. 우리는 郡民의 代表者로서 人格陶冶 및 資質向上에 努力하여 議員의 品位를 維持하며 郡民의 意思를 充分히 代辯한다.

2. 우리는 郡民을 위한 奉仕者로서 오직 郡民의 自由와 權利增進을 위하여 公益優先의 精神으로 誠實하게 職務를 遂行하여 私益을 追求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公職者로서 職務와 關聯하여 不正한 利得圖謀, 地位濫用, 他人을 僞한 不當斡旋等을 一切하지 아니하며 오직 淸廉하고 儉素한 生活을 率先垂範한다.

4. 우리는 議會의 構成員으로서 서로간에 議政活動上 公正한 與件과 機會均等을 保障하고 充分한 討論으로 問題를 解決하며 法規節次를 遵守하므로써 健全한 議會風土를 造成하도록 努力한다.

5. 우리는 郡民의 代辯者로서 議政活動과 關聯된 모든 公,私職 行爲에 對하여 分明한 責任을 진다.

'91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수행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에서 '91. 12. 8~12. 11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표)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등에 의해 경직된 행정으로 각종 사업선정 및 시행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의 성실성 결여로 업무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이 주어진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미흡한 사항등 14건을 밝혀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므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故事成語

※三人成虎 / 삼인성호

[意義] 거짓을 꾸며 남을 참소하는 말이 얼마나 쉽사리 믿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며 또한 믿는 사람의 愚鈍함을 傳하는 이야기도 된다.

[解義] 戰國策의 魏에 『市之無虎明矣然而 三人言之則成虎』란 어귀가 있다. 이 이야기는 魏의 방총이 太子와 趙의 한단에 人質로 가게 되었을때 惠王에게 『여기 한 사람이 市中에 범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主上께서는 그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니?』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市中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亦是 의심해 보지』

『그러면 세 사람이 똑같이 말한다면 主上께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市中에 범이 나타날 수 없지만 세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하니 범이 나타난 것으로 됩니다. 臣이 한단으로 떠난 後 臣에 對하여 讒言이 들어 올것이니 主上께서 洞燭하여 주시기를……』했으나 惠王은 側近의 讒言에 놀아나 방총을 의심하고 終身토록 歸國을 不許했다.

말이란 것이 무섭다 無에서 有를 만들어낸다 더욱 그 有를 至極히 道理에 맞는듯이 錯覺시킨다.

'92예산 892억 확정

일반회계 511억, 특별회계 381억

군수 제출 예산안중 세출예산 11억 삭감 조정

'91. 11. 30일 의회에 제출된 '92년도 고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12.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인)에 이송하여 심의하였다.

예산심의 역점사항은

1. 불요불급한 사항이 관계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2. 경상적 경비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계상은 없는가?

3. 물가상승을 이유로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목은 없는가?

4. 보조금 지원의 적정여부와 주민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부기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부별심사를 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10억 6천6백5십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 사회복지시설비, 진입로 포장등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개발비, 저수지준설등 농업생산기반시설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8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억 5천8백5십2만6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91. 12.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5백1십억 8천9백7십2만 9천원, 특별회계 3백8십1억 3천2백8십만 9천원, 총 예산규모 8백9십2억 2천2백5십3만원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 의결하였다.

'92년도 예산내역

◉ 세입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계	**89,222,530**	**100**
지 방 세	55,080,000	6.2
세외수입	34,577,320	38.8
지방교부세	27,086,000	30.0
지방양여금	5,724,080	6.4
보 조 금	16,327,130	18.3

◎ 세출분야

(단위 : 천원)

일 반 회 계		
비목별	예산액	구성비
계	**51,089,721**	**100**
의 회 비	357,175	0.7
일반행정비	15,248,123	29.9
사회복지비	6,501,937	12.7
산업경제비	14,061,168	27.5
지역개발비	12,014,774	23.5
문화 및 체육비	940,898	1.8
민 방 위 비	756,130	1.5
지원 및 기타경비	1,209,516	2.4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액	구성비
계	**38,132,809**	**100**
상수도사업	2,926,862	7.7
주 택 사 업	1,389,028	3.6
의료보호기금	2,272,163	6.0
새마을소득금고	16,000	0.1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8,600	0.2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6,558	0.3
해창오마간척사업	4,566,756	12.0
농공지구조성사업	54,936	0.1
공유임야관리	212,352	0.5
양 여 금	9,512,554	24,9
고흥지구간척사업	17,018,000	44.6

發議·提案·提出의 區別

ㅇ 發　　議 : 議員이 議案을 낼때

ㅇ 提　　出 :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議案을 낼때

ㅇ 提　　案 : 發議와 提出을 통털어 말할 때

상임위원회 설치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15인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가능하게 되어 제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92. 4. 8)에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 총무위원회(7명), 산업건설위원회(7명), 의회운영위원회(5명)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흥군의회는 제9회 임시회(92. 4. 27)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심도있고 능률적인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등을 실시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의회를 실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문위원등 사무직원이 확보되지 않아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나 지난 5월 의원총회를 통하여 현 군수관사에 의회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청사가 있는 타 시군을 견학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군수에게 상임위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의 충원을 요구하여 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泗川郡의원 의회 친선방문

지난 5월 13일 慶南 泗川郡議會 의원 8명이 高興郡의회를 방문했다.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高興郡의회 朴彩柱의장은『양 郡이 향토문화예술과 자방행정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서남해시대의 동반자로서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泗川郡 鄭東柱 의장은 답사를 통해『지방화시대를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高興郡의회와 교환방문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양 郡의 의정활동을 비교,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高興郡과 泗川郡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지난 88년, 郡間 상호방문을 시작으로 90년에는 高興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가졌고 지난해는 泗川의 臥龍山과 高興의 八影山 교환등반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郡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도록 상호인사도 없이 지내오다 양 郡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호교환 방문을 계획, 泗川郡 의회에서 우리 郡의회를 방문한 것.

이날 兩郡의회 의장들의 인사말에 이어 의원과 의정활동 소개, 기념촬영 등이 있었다.

현안문제 건의차 중앙부처 방문

'92년산 스페인종 마늘수매 건의를 위하여 의장외 5명의 의원은 지난 91. 10. 11일 농수산부를 방문 차관을 면담하고 수매검토키로 긍정적인 합의를 보았으

나 시행이 분명치 않아 92. 5. 22일 2차에 걸쳐 농수산부 유통국장을 면담하고 13,000여 우리 군 마늘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한 자리에서 6월 초경에 수매토록 발표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결과 92. 6. 9 전남도로부터 금년에 한하여 스페인종마늘을 수매 한다는 통첩(잠특 2727180-563호)이 있었음.

西紀1991年(檀紀4324年) 10月20日 日曜日 (日刊)

無等日報

"내년産 스페인種 마늘
90년 가격으로 收買"

農林水産차관, 高興郡의 원

【高興=郭珉基기자】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내년산 스페인종 마늘 수매를 수정, 지난 [illegible]

결으로 수매할 것으로 19일 高興郡의회 차봉태의장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韓·한건협의회 중 농림수산분과 위원장실에서 박병석농림수산부차관과 金興太의 불독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차의장은 수매가격 등에 대한 추차관의 답변과정에서 밝혔다.

차의장은 이 자리에서 『高興군내에서만 스페인종 마늘 2천1백3t의 종자를 확보, 1천1백70농가에 이를 파종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이미 종자를 구입, 파종한 상태에서 정부의 스

페인종 마늘 수매가격 인하는 농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차의장은 지난 14일 高興郡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韓·한건협의회 중 농림수산분과 위원장실에서 박병석농림수산부차관과 金興太의 불독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차의장은 수매가격 등에 대한 추차관의 답변과정에서 밝혔다.

차의장은 이 자리에서 『高興군내에서만 스페인종 마늘 2천1백3t의 종자를 확보, 1천1백70농가에 이를 파종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이미 종자를 구입, 파종한 상태에서 정부의 스페인종 마늘 수매가격 인하는 농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조사 (2회)

'91. 7. 18~7.20까지 3일간 전 의원을 4개조로 편성하여 '91시행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제8회 임시회에서 개원이후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92. 4. 13~4.22까지 8일간 관내 1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91상반기 조사때 보다 충실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부실시공된 사업장이 있어 '92. 5. 6~5. 14일까지 4일간 11개 읍면 22개 사업장을_재점검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부실한 14개 사업장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의 원 연 수

바람직한 지방자치상 정립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학술토론 및 각종 세미나와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통한 업무연찬을 다음과 같이 갖었다.

■ 지역개발정책 세미나 참석

- ㅇ 일 시 : 91. 7. 3(1일간)
- ㅇ 장 소 : 호남대학교 강당
- ㅇ 내 용 : 전남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

■ 학술토론회 참석

- ㅇ 일 시 : 91. 8~8.3(2일간)
- ㅇ 장 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ㅇ 내 용 : 지방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및 지방의회와 주민역할

■ 의원세미나 참석

- ㅇ 일 시 : 91. 9. 9~9. 11(2일간)
- ㅇ 장 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 ㅇ 내 용 :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세미나

■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참석

- ㅇ 일 시 : 91. 10. 5
- ㅇ 장 소 : 순천 행복예식장
- ㅇ 내 용 : 행정사무감사 기법

■ 정부회계제도 특별연수

- ㅇ 일 시 : 92. 6. 17~6.18(2일간)
- ㅇ 장 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 ㅇ 내 용 : 자치단체예산 수입지출결산 및 회계감사실무

■ 한양대 이기옥 교수 초청 의원세미나

- ㅇ 일 시 : 92. 6. 26
- ㅇ 장 소 : 순천 행복예식장
- ㅇ 내 용 : 지방재정확충방안 및 지방정책 수립

地方議會制度의 沿革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의 沿革을 살펴보면 1948년 7월 17일 公布된 制憲憲法에서 처음으로 近代的인 地方自治制度가 도입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 組織과 權限 및 議員의 選擧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써 정하도록 憲法에 規定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地方自治法이 制定되므로써 市·道·邑·面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法的制度를 완전히 갖추었으나

1950년에 발발한 6. 25동란으로 地方選擧의 실시가 사실상 不可能하게 되므로써 1952년 비로소 첫 地方選擧를 실시하여 1961년까지 3代에 걸쳐 운영된 바 있다.

제1대 : 1952~1956년(4년) 제2대 : 1956~1960년(4년) 제3대 : 1960~1961년(1년)

그러나 1961년 5. 16 軍事革命과 더불어 軍事革命 委員會 布告 제4호에 의해 전면 解散되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수난속에서 제7차 改正憲法(1972. 12. 27)에서 다시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써 地方議會 構成 可能性은 아주 抹殺되었으며 地方自治의 暗黑期가 계속되었다.

第 5共和國을 誕生시킨 제8차 改正憲法(1980. 10. 27)에서 「지방의회는 地方自治 團體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구성하고 時期는 法律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地方議會構成 可能性은 비쳐졌으나 5공화국에서도 지방의회의 復活을 보지 못했음은 周知하는 바와같다.

그러다가 民主化의 熱望속에 이룩된 제9차 改正憲法(1988. 2. 25)에서 위의 制限規定이 삭제됨과 동시에 改正 地方自治法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써 市·道·郡 自治區의 지방의회가 復活을 보게 되었으며,

지난 1991年 3月 26日 基礎自治團體(市·郡·區)의 議員選擧를 실시하여 同年 4月 15日 開院하게 되였고 廣域自治團體(특별시·직할시·도) 의원선거는 同年 6月 20日 선거를 실시하여 同年 7월 8일 開院을 보게 되므로써 名實共히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最高 議決機關인 地方議會가 構成되었다.

議會事務課長

申　忠　雨

군정질문 및 답변

● 고흥의 젖줄인 남계천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황폐화 되었고 농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장수제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과 생활폐수의 유입 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염방지대책과 복구계획은?

—이 경 수 / 의원—

○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오염물질 등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 10개를 집중 지도단속하겠으며, 오수정화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분료정화조 연 1회 이상 청소여부 확인점검 조치토록하고, 자연보호와 연계해서 항상 퇴적물 청소 쓰레기 단속 등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및 하천에서 세차안하기 운동 및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장수제 위에 보사부에 건의하여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으며, 오수배출업소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유

도하고 고흥군 쓰레기 매립장을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 생활보호대상자중 자가용을 비롯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대상자 책정후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유 택 근 / 의원-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2조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최저생활의 보장 및 자활조성을 필요로 한 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구분 책정하고 있으며,

9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보호신청시 실시하는 수시 조사 그리고 활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직권 조사 실시하는데, 생활보호자 실태조사 결과 상업용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한 6세대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요원을 읍면에 배치하여 생활보호자선정의 공정성과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음.

-사회과장-

• 서해안 종합개발사업이 본 군에 미치는 영향 및 책정된 사업은 무엇이며, 고흥, 녹동하천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분뇨방류에 대한 단속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박 동 래 / 의원-

○ 서해안 종합개발사업의 차원으로 본 군에 책정된 사업은 고흥지구간척개발 사업으로 1,860헥타의 간척농지조성 및 750헥타의 담수호로 3,200㎘ 의 수자원 확보로 한해 상습지 관계개선과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식량증산 및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며, 분뇨방류에 대한 단속은 고흥읍 시장통을 비롯한 각읍면 불법정화조 일제단속을 41일간 실시하여 115건을 적발하였으며 정화조 50건을 양성화 조치하고 미화사에 대하여 서면 경고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환경보호과장-

• 고흥만간척사업 확장에 따른 위생처리장 이설 및 시설노후화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도양읍 득량지선 어장정화사업에 1억이 투입되었는데 인근 장예부락이나 장계리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지?

-신 윤 식 / 의원-

○ 위생처리장은 고흥만간척사업이 시행 준공될 경우 준공된 논 안에 조유지를 담수호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담수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설할 형편이며,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90. 4. 8 시설 개선겸 용량을 늘려서 30KL를 처리할 수 있는 재원 12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승인될 경우 이설될 때까지 최신 설비로 30KL를 오염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어장정화사업은 전남도에 2개소(가막만, 득량만)로 사업 집행 지침상 분산사업을 지

양하고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양식시설 침전물등이 가장 심한 득량도 주변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면적 1,520헥타를 정화 완료하였으며 사업지구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임.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

• 금산면 관내 공·사유림내 토석채취로 인한 지선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 및 추후 허가시 민의수용 여부는?

-김 남 규 / 의원-

○ 소음방지책으로 작업시간을 준수 일몰후 작업을 중지토록하고, 분진피해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구입 1일 4~5회 이상 물뿌리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농경지 토사유입피해는 '86, '87년도에 학림산업외 5개 업체에서 7천 1십만원의 피해보상을 하였고 추후 피해발생시 보상토록 쌍방간 협약되어 있으며,

허가기간 만료휴 제허가시 지역단위 공청회 개최등 최대한 민의를 수렴한 후 허가하겠음.

-산림과장-

•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민의 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공직자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

-김 동 인 / 의원-

○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자세 탈바꿈으로 시대적 소명의식에 부응하고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25일 군읍면 68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정례 또는 수시 직무 및 소양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강도 높은 일벌 백계의 엄정한 집행으로 공직풍토 쇄신에 노력하겠음.

-내무과장-

• '90년도 통일벼 배정량을 보면, 포두면 식부 면적은 군 전체의 17.6%에 해당되는데 수매실적은 7.9%로 저조한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벼 증액 배정은?

-류 준 상 / 의원-

○ '88-'90년까지 3년간 통일벼 평균수매실적과 식부면적을 감안하여 각각 50%를 적용한 결과 통일벼 예시량 15만 3천 가마를 100%로 할때, 가장 많은 읍면은 포두면으로써 전체의 12.76%인 2만 1천 가마가 배정되었고, 가장 적은 면은 봉래면으로써 0.77%인 약 1천 2백 가마가 배정되었으며 앞으로 추곡수매량 배정시 고려하겠음.

-산업과장-

• 공사입찰시 예정가 대 낙찰가액이 99%선에서 비슷하게 입찰된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아울러 최일선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군수산하 공직자의 군읍면간 순환 보직 제도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고 임 준 / 의원-

○ 공사의 설계내역, 여건, 계속공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의 예정가를 결정하게 되며 입찰 참가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예정가와 비슷한 입찰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순환보직제도는 군 전입요인이 있을때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전입고사를 시행 전입토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 일정기간 행정연마를 마친 8급이 7급으로 승진시는 읍면 근무토록하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나 활성화 방안을 더욱 검토하겠음.

-부군수, 내무과장-

• U.R관계로 소득이 낮아 생의 의욕을 가뜩이나 잃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서지역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도선들이 규정에 의한 요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확인해 보았으며 도서지역 교통관계를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최 형 문 / 의원-

○ 도서지역 교통요금 징수사항을 월 2회 수시 점검 결과 아직까지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발견치 못하였고 여론상 부당요금을 징수한다하여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발견된 사례가 없었음, 앞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등 지속단속을 하겠으며 도서지역 교통관계를 도울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겠음.

-지역경제과장-

• 점암면 성기리에 위치한 팔영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산자수려하고 1일 등산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아래는 범종, 사적비, 대웅전 등 유형문화재가 있는 능가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건의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 선 규 / 의원-

○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 지역이므로 관광휴양지로 용도 변경 설계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용역비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 추정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변경할 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15,000M^{2}이하는 도지사 승인으로 가능함.

그리고 관광지 지정신청을 교통부장관이 하며 관광지 조성면적 5헥타 계획시 설계용역비는 약 8천만원이 추정되고, 편입토지 매입문제, 막대한 개발사업비 및 개발의 수익성 분석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 군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오나 88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계획수립한 서남해안시대개발계획의 일환인 팔영산 관광개발계획과 연계 조속 추진토록 중앙에 건의하겠음.

-문화공보실장-

• 본 군의 과역면 구곡-외호, 도양읍 녹동-신흥, 녹동-봉암등 3개 구간의 농로 및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고 기타 농어촌 도로의 연차별 정비 및 관리계획과 '92년

부터 소규모지역개발에 따른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집중 개·보수를 위한 투자용의는 없는지?

-송 복 조 / 의원-

○ 지방도, 군도에 대한 신규 승격 및 노선 구간 조정은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억제토록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 과역면 구곡-외호 외 2개 노선에 대한 군도승격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정계획과 현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타당할시에는 승인, 신청토록 하겠음, 관내 62개 노선 511Km에 대해 '90. 12. 31 농어촌도로로 고시한 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내시전인 금년 하반기에 전 노선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불편해소와 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의 숙원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간선도로 개·보수사업은 당해 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새마을 과장, 건설과장-

• 본 군 동강면 장도리가 보성군 벌교읍으로 행정구역 변경될 때 행정구역은 도 입회하에 본 군과 보성군 어민대표 합의하에 설정되었는데 요즘 보성군에서 해면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도에 요구하였다는데 개황과 군 방침은?

-송 기 복 / 의원-

○ 보성군에서 200헥타의 해면에 대해서 재조정 요구가 있어 도관계자 및 본군 수협과 보성군 수협 그리고 각 어민대표 등이 참석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해면구역은 수산업법상 군간 조정이 안될 때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음.
군에서는 '83년 당시의 해면 행정구역은 공정하게 설정되었음을 주지, 지선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양보할 수 없음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도 조정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수산과장-

• 현재 제반 마을운영관리에 있어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로 위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간부의 회의 빈번으로 농촌일손과 가정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바 최소한 회의를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송 용 현 / 의원-**

○ 리장임용은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리개발위원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주민총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얼마든지 마을에서 겸직 추천이 가능하며, 새마을부녀자 회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협조하여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회의소집을 지양토록 하겠음.

-새마을과장-

•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익년 5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농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1개월 앞당겨 마무리할 수는 없으며, 하도급을 영세업자에게 주어 하자 보증금 예치를 미끼로 보수를 않고 있어 하자보수가 대단히 미흡하다. 공작물중 낙차공등은 시멘트 강도가 약하여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 영 표 / 의원-

○ 경지정리는 10월에 착공 익년 5월 준공이 상례이오나 4월 30일 지균작업을 끝내고 있어 한달 앞당겨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지정리를 매년 300~500헥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독 불충분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작물 설치시 읍면에 감독을 상주시켜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음.

-건설과장-

반족할 줄 아는 자는 넉넉하다.
근면한 사람이여, 그대 뜻 이뤄지고
제 분수 지키는 자 멸망하지 않는다.

삶의 이 근원을 꿰뚫는 자여
그대 영원하고 또 무궁하리라.〈道德經〉

조례 제·개정 내용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제3회 임시회 (3건)	○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개정)	군수	○ 현실에 맞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로 정함 -간사는 새마을과장,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규정	원안가결
	○ 고흥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	군수	○ 공공용지 과세표준액의 경감에 대한 범위 축소로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기하고 부동산 투기예방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전지역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 용지만을 경감과세함	원안가결
	○ 고흥군수입증지조례(개정)	군수	○ 각종 민원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다양화로 적절한 액면의 수입증지 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400원권 및 700원권 수입증지 발행	원안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제4회 임시회	ㅇ고흥군민의상 조례(개정)	군수	ㅇ 조례 자체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조문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안 제출 -조례목적에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삭제하고 대상에 고흥군 출신 타지역 거주자 포함 -군민의상을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수상 -심사위원을 의회의원 16명 포함 21인 이내로 함.	위원회 대안 가결
	ㅇ고흥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개정)	군수	ㅇ 기 제정된 군민의 노래를 조례로 제정 올바른 군민의 노래 보급에 기여	원안 가결
	ㅇ고흥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	군수	ㅇ이장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혜택으로 사기진작도모, 지역봉사의식 고취 -지급 정원을 이장정수의 15%이내로 5% 상향 조정	원안 가결
	ㅇ고흥군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개정)	군수	ㅇ도로유지 관리업무의 일괄성을 유지하고 각종 도로의 무단굴착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부담금 징수 및 복구 기준 설정 -도로굴착 또는 도로손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시 행위자로 부터 부담금 징수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는 징수면제 금액의 3배의 과태로 징수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제6회 임시회	ㅇ 고흥군결산 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개정)	의원	ㅇ 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의원, 공인회계사, 기타 선임된 위원등으로 구분	원안 가결
	ㅇ 고흥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개정)	군수	ㅇ 저소득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에 사회복지전문 요원 배치 －고흥군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신설	원안 가결
	ㅇ 고흥지구 간척 사업소 설치에 관한조례 (개정)	군수	ㅇ 고흥만 공유수면 3,100헥타 매립을 위한 간척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민원처리	원안 가결
	ㅇ 고흥지구간척 사업소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군수	ㅇ 고흥지구간척사업소에 따른 제반경비를 관리 집행하여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특별회계 세입은 농지기금, 보조금 기타수입 －세출은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기타 경비로 지출	원안 가결
제7회정기회	ㅇ 고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군수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군세감면 현행 조례중 승용차 4기통 이하를 2000CC이하로 개정	원안 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ㅇ고흥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개정)	군수	ㅇ 고흥군 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대상을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를 "지적고시된 토지"로 개정	원안 가결
	ㅇ 고흥군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군수	ㅇ 19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것을 1994년말로 3년간 적용시한 연장	원안 가결
	ㅇ고흥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	군수	ㅇ19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것을 1994년 말로 3년간 적용시한 연장	원안 가결
	ㅇ고흥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개정)	군수	ㅇ19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것을 1994년 말로 3년간 적용시한 연장	원안 가결
	ㅇ고흥군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군수	ㅇ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급대상: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의 종류:특별 및 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함	원안 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고흥군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개정)	군수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서 사업소세 제외	원안 가결
	○고흥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에 따른 군세과세면제	원안 가결
	○고흥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군수	○지방세법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 없어 폐지	원안 가결
	○고흥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군수	○향교재산중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1의 세율적용으로 종합토지세 경감	원안 가결
	○고흥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군수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원안 가결
	○고흥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제정)	군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 면제	원안 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 고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	군수	○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세입 :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수입금 －세출 :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 육성사업 －세출 재원 부족시 지방채발행	원안가결
	○ 고흥군군세조례(개정)	군수	○ '91. 1. 1일자로 시행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군세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	원안가결
제8회임시회	○ 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	의원	○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그 직무와 소관사항을 규정 ○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됨.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겸임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원안가결
	○ 고흥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의원	○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여비 지급	원안가결
	○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의원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음 ○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원안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ㅇ고흥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	군수	ㅇ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도지사 소관으로 전환 본 조례 폐지	원안 가결
	ㅇ고흥군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 급 조 례(폐지)	군수	ㅇ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제정 공포로본 조례폐지	원안 가결
	ㅇ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	군수	ㅇ의료보호관계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개정 ㅇ대불금 상환규정 및 결손처분 규정삭제	원안 가결
	ㅇ고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설치조례(개정)	군수	ㅇ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12~15인 이내의 위원회 설치 ㅇ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 기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함	원안 가결
	ㅇ고흥군여비조례(개정)	군수	ㅇ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2개 지역으로 구분 ㅇ숙박료, 식비 및 현지 교통비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원안 가결
제10회임시회 (3건)	ㅇ고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군수	ㅇ고흥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자구 수정 원안 가결

회 기 별	조 례 명	발의및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 형태
			○ 위원의 일비를 일률적으로 30,000원으로 조정	
	○ 고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군수	○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 추진상의 필요 및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	원안 가결
	○ 고흥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군수	○ 고흥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관련 조례 폐지	원안 가결

會議關聯用語

※. 開院 : 總 選擧後 議會를 構成하는 것.

※. 開議 또는 開會 : 成員이 되어 本會議 또는 委員會를 여는것

※ 通常 定期會, 臨時會議 會期를 여는 것을 開會라 하고, 會期중 當日 會議를 여는 것을 開議라 함.

高興 存心堂 및 衙門

(有形文化財 第53號)

存心堂은 朝鮮祖 英祖 15年(1739)에 縣監 金時傑이 創建, 朝鮮祖 高宗 8年(1871)에 重建하였으며,

衙門은 朝鮮祖 英祖 41年(1765)에 建立되었다고 傳해지고 있는 建物로써

存心堂은 現 高興郡廳안에 그 正門인 衙門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본래 守伶 및 座首六房이 執務를 보던 官衙의 建築이며 衙門은 지붕 기와에서 乾隆 30年이라는 銘文이 發見되어 朝鮮祖 41年(1765)의 建築物로 推定하고 있다.

存心堂 본체는 正面 5間, 後面 3間의 全層入作 기와집으로 되었고 長臺石 바른층 쌓기의 基壇위에 圓形다듬돌 礎石을 놓고 배흘림이 보이는 두리 기둥을 세워 初翼工式으로 꾸몄으며,

衙門은 솟을 三門式으로 御間의 지붕이 兩側 지붕보다 높고 3間 모두에 두짝의 板牆門으로 되었다.

이 存心堂과 衙門은 道內에서 唯一한 有形文化財 第53號로 指定된 建築物이다.

의 장 단 명 단

● 군의회 의장 朴彩柱　　● 부의장 兪澤根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위원
운영위원회	金東仁	柳俊相	朴東來, 崔亨文, 宋福助
총무위원회	宋基福	朴東來	申允植, 高林俊, 朴龍浩, 宋龍炫, 丁永杓
산업건설위원회	金南奎	宋福助	李京洙, 兪澤根, 柳俊相, 崔亨文, 金善圭

의 원 명 단

선거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고흥읍	李京洙	고흥읍 서문리 219-51	35-2789	
도양읍	兪澤根	도양읍 봉암리 2242	842-0009	842-2218
풍양면	朴東來	풍양면 당두리 350	32-4715	32-5079
도덕면	申允植	도덕면 가야리 206	843-0765	
금산면	金南奎	금산면 대흥리 581	843-8789	
도화면	金東仁	도화면 당오리 522	33-0123	34-0204
포두면	柳俊相	포두면 상대리 1	32-5383	35-8708
봉래면	高林俊	봉래면 신금리 1086-1	33-6541	32-0777
동일면	崔亨文	동일면 봉영리 241-1	33-7074	
점암면	朴彩柱	점암면 화계리 63	33-9400	35-1226
영남면	金善圭	영남면 금사리 732-18	32-8852	
과역면	宋福助	과역면 과역리 439-2	33-5001	32-1001
남양면	朴龍浩	남양면 대곡리 2137-4	33-5472	
동강면	宋基福	동강면 유둔리 198-1	33-2401	
대서면	宋龍炫	대서면 상남리 1107	33-3577	
두원면	丁永杓	두원면 학곡리 55-6	35-4010	

투고 환영

고흥군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 발전과 군정 창달에 보탬이 될 군민 여러분의 진솔한 고견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의정, 군정에 관련된 사항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 사항

－기타 논단, 칼럼, 제언 등

◈ 분 량 : 200자 원고지 5~8매

◈ 접수기간 : 수시

◈ 보 낼 곳 : 고흥군의회 사무과 (☎ 35－1228)